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19호
----------	------

2019. 3. 21.

건명	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(회계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9. 3. 6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3. 6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#### [일반회계]

-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변경
  - 연무읍 황화정리 산26-22번지 외 15필지 23,164㎡(토지), 1,170㎡(건물)

## □ 검토의견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20호

2019. 3. 21.

건명	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회계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9. 3. 6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3. 6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#### [일반회계]

- 룬블경기장 건물 취득
  - 등화동 534-1번지 1,600m<sup>2</sup>(지붕)
-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토지 취득
  - 양촌면 남산리 1-1번지의외 25필지 110,415m<sup>2</sup>(토지)
- 논산시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
  - 강경읍 황산리 87-22번지의외 7필지 4,379.3m<sup>2</sup>(토지)

## □ 검토의견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